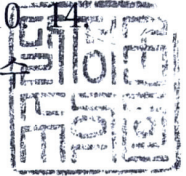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4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9. 10. 14

제출자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의 “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계획”에 따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2조제3호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행정안전부의 “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 계획”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제정 조례(안) : 붙임 참조

(2) 성별영향평가 : (원안 동의 혹은 해당사항 없음)

(3) 부패영향평가 : (원안 동의 혹은 해당사항 없음)

(4) 규제심사 : (해당사항 없음)

(5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9. 9. 17. ~ 10. 7.(20일)

(나) 예고결과 : (의견 없음)

(6) 비용추계서 : 생략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)

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계리” 를 “회계처리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” 특별회계”란 군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<u>계리</u> 할 필요에 의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.	3.----- ----- ----- <u>회계처리</u> ----- ----- -----.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
